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〈신 설〉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도시보증공사 취득·보유 미분양주택 지방세 감면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대상자) 주택도시보증공사 ○ (감면대상) 지방 준공 전 미분양 공동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취득조건)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8년 말까지 취득 ○ (감면율) 취득세·재산세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최소납부 배제 ○ (추징요건)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[*]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중인 경우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 ○ (일몰기한) 2030년 말
〈신 설〉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재매입 시 취득세 감면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대상자) 사업주체 ○ (감면대상)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가 환매기간[*]내에 재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1년 ○ (감면율) 취득세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최소납부 배제 ○ (일몰기한) 2030년 말